



# 환 경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석면의 폐기물배출자 범위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폐석면의 배출자를 건설폐기물의 경우와 같이 최초 도급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관할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축물 철거 시 폐석면 배출자의 범위 : 건축주, 공사 발주자
  -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배출자는 건축주 또는 공사 발주자가 되어야 함(최초 도급자는 폐석면 배출자가 될 수 없음)
- 건축물 철거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 : 건축주, 공사 발주자 이외에 최초 도급자도 배출자가 될 수 있음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의 범위에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인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 끝.

# 환경부



수신자 광주광역시(환경정책과장), 인천광역시(환경정책과장), 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장), 울산광역시(환경정책과장), 부산광역시(환경정책과장), 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기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환경정책담당관),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전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주무관 김광석      환경사무관 민종기      폐자원관리과장 최종원      전결 04/14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625      (2009. 04. 14.)      접수  
우 427-729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http://www.me.go.kr  
전화 02-2110-6935      전송 02-502-9292      / kskim@me.go.kr      / 대국민공개